

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대전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『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』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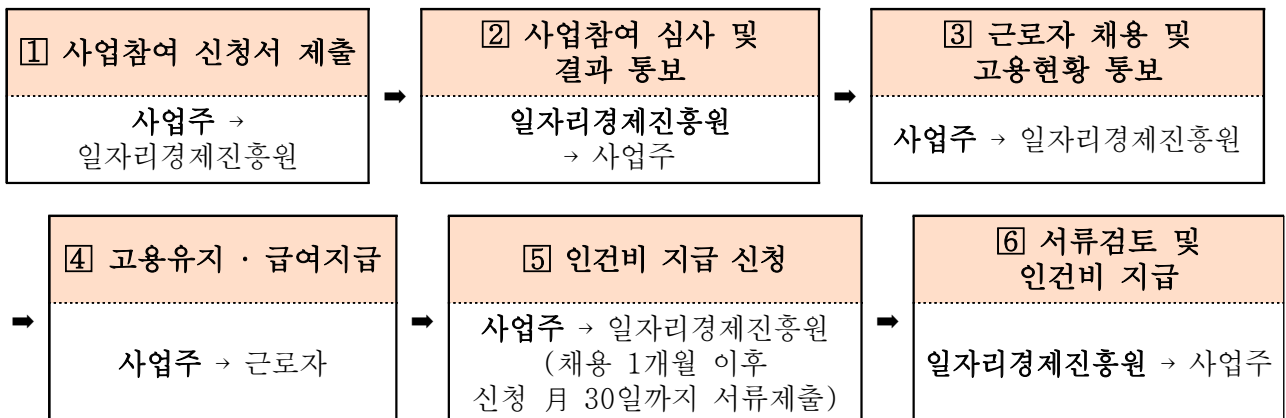
2023년 3월 30일

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 : 인력수급 및 경영난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
- 사업명 :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
- 지원규모 : 370명 (기업당 최대 3명)
※ 예) 해당 사업 최초공고일(2021.10.18.) 이후 2명을 지원받은 기업은 1명 추가지원 신청 가능
- 지원내용 :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의 90% (1인당 월 1,800천원 한도, 6개월) 지원
- 공고기간 : 2023. 3. 30.(목) ~ 2023. 6. 10.(토)
- 접수기간 : 2023. 4. 10.(월) ~ 2023. 6. 10.(토) ※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
-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 / hr.djbea.or.kr

2. 지원 절차



3.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

□ 지원대상 및 자격

중소 기업 (사업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- 제조업, 제조관련 서비스업, 건설업, 지식산업, 영상산업 및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- 1인 1사업장 지원 예)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
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전광역시 거주자(주민등록상) - 외국인 중 F2(장기체류), F5(영주권), F6(결혼) 비자 보유자 지원가능 ※ 단, 타 시도 거주자는 채용일 전일까지 대전시 전입신고 시 지원 - 채용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 ※ 2021. 10. 18.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- (지원제외) 국가 및 지자체 타 인건비 유사사업 신청 및 수혜 근로자

※ 지원업종

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
제조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10~33)
제조관련 서비스업	폐기물수집운반업(381), 폐기물처리업(382),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(49301, 52992, 49231, 49232),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(5210, 5294), 정보서비스업(63), 엔지니어링서비스업(7212),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(729), 전문디자인업(732), 건설및토목공사용 기계·장비임대업(7631),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7639), 건설장비운영업(4530)
건설업	산업건설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공사업체
지식산업	소프트웨어개발업및공급업(583), 연구개발업(70), 엔지니어링서비스업(7212)
영상산업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(5911)
협동조합	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 협동조합

□ 지원 제외대상

<p>중소기업 (사업주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(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기관) 및 공직유관단체 •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 및 최저임금액 이하 임금 지급 사업주 •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주 •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• 폐업, 휴업,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
<p>근로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대 보험 미가입자 •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•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•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(지원기간 중복지원 불가)

□ 지원금 지급기준 : 사업주에게 인건비 매월 지급

<p>지급 기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,620원 적용 및 월 209시간(일 8시간) 근로 기준 90% 지원 -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 ※ '21. 10. 18.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① '21. 10. 18 이후 ~ '23년 공고 이전 고용된 인력</p> <p>→ 지원금 신청일까지 신청인력 고용유지, 6개월분 일괄지급 신청 시 : <u>채용일부터 일괄지급 신청일까지</u> 유사사업 미참여 시 지급</p> <p>→ 지원금 신청일까지 신청인력 고용유지, 매월 분할지급 신청 시 : <u>지급 신청일부터 신청 종료일까지</u> 유사사업 미참여 시 지급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② '23년 공고 이후 고용된 인력</p> <p>→ 지급 신청일부터 신청 종료일까지 신청인력 고용유지, 지급 신청 시 : <u>채용일부터 신청 종료일까지</u> 유사사업 미참여 시 지급</p> </div>
<p>지급 금액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월 상한액 1,800,000원/인 - 근로자 근무시간은 출근부 기준 실근로시간 90%로, 6개월 이상 근로 시 최대 10,800,000원 → (예시) 출근부 기준 실근로시간 8h×9,620원×90% = 지원금액 69,260원 -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 이하인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90% 지원

4. 신청 접수

- **공고기간** : 2023. 3. 30.(목) ~ 6. 10.(토)
 - 신청·접수기간 : 2023. 4. 10.(월) ~ 6. 10.(토)
 - ※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

- **신청방법** : 온라인 신청
 - (신청 전용 홈페이지) hr.djbea.or.kr

- **제출서류 (온라인 작성 및 첨부)**

< 사업참여 신청 >

- ① 사업참여 신청서 및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
- ② 사업자등록증명원
-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④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
(발급기간 : 2021.10 ~ 신청월 / 상실내역 포함)
- ⑤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(홈페이지 소정양식)
- ⑥ 중소기업확인서 (발급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)
- ⑦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< 신규근로자 채용현황 통보 >

- ① 고용현황 통보서
- ② 근로계약서 사본
- ③ 대표자 및 신규근로자 신분증 사본
-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
- ⑤ 신규 근로자 주민등록초본
- ⑥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< 인건비 지급 신청 >

- ①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급 신청서
- ② 기업(대표자) 통장사본 (급여 이체와 동일 계좌)
- ③ 출근부
-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⑤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
(발급기간 : 신규 고용월 ~ 신청월 / 상실내역 포함)
- ⑥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
- ⑦ 급여 지급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이체증)

5. 유의사항

□ 근로자 고용

- 최초 공고일(2021.10.18)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
-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
- 신규 고용 근로자 4대 보험 의무가입 필수
- 신규 고용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무하고 있어야 함
-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채용 희망 인력을 2023.6.10까지 고용하지 않을 경우, 미고용한 인원만큼 예비기업에 순차적으로 지원됨
- 신규고용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 전까지 인건비 일할 계산 지급
 - ※ 신규고용 후 6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, 대체채용 1회 지원(해당자 사직서 등 확인)
-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신규고용으로 인정
- 동일기간 유사사업 신청자 또는 수혜자는 지원 제외

□ 인건비 지급 신청

- (인건비 지급) 매월 신청 / hr.djbea.or.kr
 - 중소기업이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출한 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, 검토 후 매월 기업에 계좌이체 지급
 - ※ 1. 급여 지급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함
(현금 지급,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)
 - 2. 지원금 신청 전 폐업,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
-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: 채용 1개월 이후부터 2023. 12. 10까지

□ 지도감독

- 진흥원은 필요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근무 현황 등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음
- 허위 고용 적발, 적정한 사유 외 고용인원 부재 등 발견 즉시 지원 제외

□ 지원금 환수

-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전액 환수
 - 사업 참여기간 중 국가 또는 대전시 유사사업 등을 중복 수혜받은 기업은 환수대상이며, 추후 진흥원 기타사업 참여제재 및 불이익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기타 안내사항
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청기준에 부적합할 시,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공고상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

6. 참고사항

제출서류 및 발급처

제출 서류명	발급처
사업자등록증 · 사업자등록증명	세무서,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
(근로자) 주민등록초본	정부24(www.gov.kr)
(대표자) 가족관계등록부	
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4대보험 관련 기관
4대 보험 완납 증명서	
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※ 발급 조회기간 2021.10.18 ~ 신청 년월일	○ 근로복지공단(☎ 1588-0075) - 대전지역본부(서구 한밭대로 809) - 유성지사(유성구 반석로 9 더존타워) ○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total.kcomwel.or.kr/)

사업문의

- 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☎042) 380-7921~5

(참고)

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방법

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(<http://total.kcomwel.or.kr/>)

- ① 사업장 → ② 증명원 신청/발급 → ③ 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
- ④ 사업장 관리번호 돋보기 클릭 → 자신의 사업장 선택
- ⑤ 조회기간 : 신규 고용일 기준
현취득자 : 체크하지 말 것
- ⑥ 발급범위 : 전체근로자 선택 발급

4대 사회보험 관련기관

발급기관	지사	주소	연락처
국민연금공단	대전지역본부	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	042-480-4896
	북대전	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	1355
	동대전	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, 14층	042-720-4035
국민건강보험공단	대전유성지사	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북로 62	1577-1000
	대전서부지사	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68번길 15-13	
	대전중부지사	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	
	대전동부지사	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495	
근로복지공단	대전지역본부	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	1588-0075
	유성지사	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9	